

2017 대전광역시 지방소방공무원 추가 채용시험계획 공고

2017년도 대전광역시 지방소방공무원 추가 채용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4일

대전광역시장

1 및 시험과목

시험명	계급	분야	선발예정 인원(명)			시험과목	비고
			계	남자	여자		
			34	30	4		
채용시험	방소방사		12	12		(필수3) 국어, 한국사, 영어 (선택2)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경력경쟁 채용시험	지방소방사	구급	12	8	4	(필수3)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자동차운전	10	10		영어 :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등	

* 시험과목의 출제범위는 붙임 2, 3, 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시험단계 및 합격자 결정

.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 1)
 - 10:00~11:40 (100분)
 - 경력경쟁시험 10:00~11:00 (60분)
- 2) 배 점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 3) 문제형식 : 4지 선택형 20문항
- 4) 문제출제 : 중앙소방학교 위탁출제

- 5) 시험문제 공개여부 : 비공개, 시험 종료 후 문제지 회수
- 6) 합격자 결정방법 :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의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 인원의 2배수 범위 내에서 합격자를 결정함.
- 7) 선택과목의 득점 산출 방법 :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 점수의 표준편차와 평균점을 적용하여 조정점수로 산출하며, 선택과목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공개하지 않음.

나. 제2차 시험 : 체력시험

- 1) 시험종목 : 6종목(악력, 배근력,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제자리 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왕복오래달리기)
- 2) 배 점 : 각 종목별 10점, 총점 60점 만점 / 붙임5] 참고
● 「소방공무원채용시험시행규칙」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 채점표 적용함.
- 3) 측정방법 : 「소방공무원채용시험시행규칙」 별표 4를 적용함 / 【붙임6】 참고
- 4) 합격자 결정방법
● 6개 종목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함(「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6조 제1항 제2호)

◀ 채용 체력시험 도핑테스트 안내 ▶

-) 체력시험 응시인원의 10% 이내에서 무작위로 선정하여 실시 함
- 나) 도핑테스트 시행 및 절차는 붙임7] 참고
- 다)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은 【붙임8】 참고
- 응시자는 금지약물, 금지방법, 응시자 본인 복용약물의 금지약물 해당여부 및 약물의 지속기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도핑테스트 판정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
- 라) 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분석(양성) 판정 시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소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한 시험 및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 될 수 있음.

다. 제3차 시험 : 신체검사·인적성검사 및 서류전형

- 1) 신체검사 방법 :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문에 지정하는 병원에서 실시 하며 검사 수수료는 응시자가 개별 납부함.
- 2) 신체검사 합격결정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에 적합한 사람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하며, 불합격 판정기준은 「소방공무원채용시험시행규칙」 제6조 제3항 관련 별표 3에 따름 / 【붙임9】 참고

● 결과 판정보류 등 재검사 사유가 발행한 경우에는 면접시험 전일 까지 최종 신체검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3) ·적성검사 실시(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6조 제1항 제4호)

● **체력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소방공무원으로서 인성, 적성을 관계 전문기관 에서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 결과는 면접시험에 활용함.**

4) 서류전형 : 체력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응시자격 요건 등을 서면으로 심사

● 제출서류에 의하여 응시자격요건, 경력, 가산특전 등에 대해 적합여부 심사

· 제4차 시험 : 면접시험

1) 면접방법 : 제1단계(집단면접)와 제2단계(개별면접)로 구분하여 실시함.

● 제1단계 집단면접에서는 토론 면접을 병행하여 평가함.

2) 면접점수 : 제1단계 30점, 제2단계 30점 만점으로 함.

3) 합격자 결정방법(「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6조 제3항)

● 제1단계 집단면접과 제2단계 개별면접의 평정요소에 대한 시험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함

● 단,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해 40%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함.

마. 최종합격자 결정

1) 단계별 시험에 모두 합격한 사람 중 필기시험성적 75%, 체력시험성적 15%, 면접시험성적 10%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함.

2)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거나 결원을 보충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3

가. 응시결격사유(공통)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거나,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15조 및 제51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 할 수 없습니다.

(당해 최종시험일 기준)

▶ 제31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등)	①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은 경력경쟁채용 등을 할 수 없다.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또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권자가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①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 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 자격 및 경력제한

1) 응시요건 : 「제80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응시원서 접수일 기준)

2) 경력경쟁 채용시험의 분야별 응시요건(당해 최종시험일 기준)

시험	분야	계급	자격(면허) 및 경력 제한
경쟁 채용 시험	급 일 반	지 방 소방사	<p>, 간호사,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면허증)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응급의료업무 또는 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의료업무라 함은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구조응급처치 및 이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나 응급의료 교육을 강의한 경력 - 간호업무라 함은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목적으로 근무한 경력 <p>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에 근무한 경력</p> <p>※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27조의 응급의료정보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③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2조 및 제51조에 의한 이송업체 근무경력 ④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공공보건의료기관 근무경력 ⑤ 「지역보건법」 제10조에서 규정한 보건소에서 근무한 경력 ⑥ 「학교보건법」 제15조에서 규정한 보건교사로 근무한 경력 ⑦ 소방관련 교육기관(응급구조학과)에서 조교교수로 근무한 경력 ⑧ 소방기관에서 구급대원 또는 구급대원 대체인력 또는 의무소방원, 사회복지요원(공익근무요원)으로 구급대원 보조(복무 확인서 필요)로 근무한 경력 ⑨ 군 의무병으로 복무한 경력(병적증명서 및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군복무확인서 필요) ⑩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업체 응급의료 관련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지 방 소방사	<p>○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운전실무 경력이 있는 자(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8 참조)</p> <p>※ 운전 실무경력 인정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승차정원 16명 이상의 승합자동차 ② 적재중량 12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③ 긴급자동차(제1종 보통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제외) ④ 건설기계(3톤 미만의 지게차 제외) ⑤ 특수자동차(총 중량이 10톤 이상인 것)

등 자료제출 :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 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

3) 응시연령

시험구분	분야	계급	연령	해당 생년월일	비고
채용시험		지 방 소방사	18 이상 40세 이하	1976.1.1.~1999.12.31.	
경력경쟁 채용시험	구 급 자동차운전	지 방 소방사	20세 이상 40세 이하	1976.1.1.~1997.12.31.	

응시연령 연장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 제1항에 의한 사회복지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 의사·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 6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중방역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3세
- ☞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2세
- ☞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1세

다. 지역제한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

- 다음 '1)' 또는 '2)' 중 하나를 충족하면 응시할 수 있으며, 지역제한 요건의 확인은 주민등록표 초본을 기준으로 합니다.

- 1) 2017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주민등록의 말소,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2) 2017년 1월 1일 이전까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이 통·폐합된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거주한 기간을 월()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자(주민등록의 말소, 거주불명 등록기간은 제외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 신고 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 신체조건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5

부분별	합 격 기 준
격	양팔과 양다리가 완전하며, 가슴 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시 력	두 눈의 맨눈 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색 (각)	색맹 또는 적색약() (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 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혈 압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mmHg를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를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 혈압이 90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mmHg 미만인 것) 이 아니어야 한다.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 신체조건표 외의 정하지 않은 사항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6조 별표 3에 의함.

4 접수 및 시험일정

인터넷 원서접수	시 험 구 분		장 소 공 고	시 험 일 자	합격자 발표
9.11.()~9.15.(금) / 5일간 09:00~21:00 취소마감일 : 9.20.(수) 21:00	제1차	필기시험	10.13.(금)	10.28.(토)	11.14.(화)
	제2차	체력시험	11.14.(화)	11.21.(화)	12.08.(금)
	제3차	신체검사	12.08.(금)	12.12.(화)	12.19.(화)
		적성검사 (서류전형)		12.13.(수)	
제4차	면접시험	12.19.(화)	12.28.(목)	'18.1.9.(화)	

- ※ 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대전광역시 홈페이지(시험정보)에 공고합니다.
- ※ 필기시험 개인별 성적과 시험단계별 합격자 발표는 대전광역시 홈페이지(시험정보)를 통하여 공개합니다.
 - 필기시험 불합격자의 성적 공개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
 - 필기시험 합격자의 성적 공개 :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일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 1) 통합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를 통하여만 접수합니다.
응시원서 접수 및 취소 관련 문의 : 인터넷원서접수센터(☎1522-0660)
- 2)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보훈번호 등)를 원서접수 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가산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산특전 자격증을 잘못 기재 또는 누락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입니다.

나. 접수 및 취소시간은 09:00 ~ 21:00입니다.(단, 취소는 토, 일요일은 제외)

다. 응시수수료 등 비용

- 1) 응시수수료 : 5,000원(결제비용은 별도)
- 2) 응시원서 접수 및 취소기간 내에 취소하는 경우에 응시료 전액 환불
- 3)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함

라. 사진등록

- 1)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규격은 해상도 100DPI, 3.5 ×4.5cm입니다.
- 2)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 또는 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지 아니한 식별이 용이한 명함용 사진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배경사진 등 불가)
- 3) 응시원서에 등록한 사진은 합격 후 동일원판 사진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유의사항

- 1) 응시원서 기재사항은 접수기간 내에만 수정 가능하며, 응시분야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취소 후 다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2) 응시표는 필기시험 장소 공고일부터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출력가능하며, 원서접수증으로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3) 체력시험 합격자는 자격요건 등에 대한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응시원서에는 전화번호 및 휴대폰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가.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분		가 산 비 율	비 고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1개만 적용
의사상자 등 (유족, 의사 본인 및 가족)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자격증 등 소지자	자격증 (면허증)	과목별 만점의 1%~5%	·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 등 가점과 자격증 가점은 각각 적용 · 자격증(면허증) 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은 합산하여 최대 5%까지만 적용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나~바' 참고
	사무관리	과목별 만점의 1%~3%	

나. 취업지원 대상자

- 1)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단계별 시험에서 과락을 면한 경우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2)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여부와 가점비율은 사전에 국가보훈처(☎1577-0606)에서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다. 의사상자 등 대상자

- 1) 「지방공무원법」 제34조의2에 의거 의사상자 등 가점 대상자는 필기시험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를 가산합니다.
- 2) 「지방공무원법」 제34조의2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6조에 따라서 의사상자 등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 의사상자 등 등록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044-202-3258)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나'항과 '다'항이 모두 해당 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마. 자격증 소지자(공개경쟁채용시험에만 적용함)

- 1)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2조,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소지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 만점의 일정 비율(1~5%, 별표6)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2) 자격(면허)증, 사무관리의 2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해서만 가점하고, 자격증(면허증) 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은 합산하여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소방직 공무원에 적용하는 가산자격증 및 가산비율(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6)

분야	5%	3%	1%
자 격 증 ()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술사 기능장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사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산업기사·기능사
	2. 1급 ~ 4급 향해사·기관사·운항사	2. 5급 또는 6급 향해사·기관사	2. 소형선박조종사,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3. 사업용조종사, 운송용 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정장정비사	3. 응급구조사(1급), 간호사	3. 제1종특수트레이더면허, 제1종대형운전면허
	4. 의사, 변호사	4. 소방안전교육사	4. 응급구조사(2급)
	5. 소방시설관리사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이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다음 중 직무분야의 기술·기능 분야 자격을 말한다.
- 건축, 건설기계운전, 기계장비설비·설치, 철도, 조선, 항공, 자동차,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정보기술, 방송·무선, 통신, 안전관리, 비파괴검사, 에너지·기상
2.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의 2개 분야를 각각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해서만 가점하고, 자격증(면허증) 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은 합산하여 0.5할을 초과할 수 없다.

바.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1) 필기시험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요건을 갖춰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보훈번호)**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OMR 별도의 가산점 표기란이 없습니다.(가산특전 자격증을 잘못 기재 또는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입니다.)

2) _____ 증빙서류(_____ 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를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주의사항

-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대전광역시 홈페이지(<http://gosi.daejeon.go.kr>) 에 공고합니다.
- 나. 응시자는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 등 자격요건이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에 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입니다.
- 라. 응시원서상의 기재사항 착오 누락이나 중복지원, 자격미비자의 응시, 지역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마. 응시표는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바. 응시자는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장애인등록증 중 1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사. 시험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시험시작 전 또는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시험시간 중에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태블릿PC, 스마트시계, PMP, MP3, 무선 호출기 등) 및 전산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를 휴대한 행위는 부정행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아. 체력시험 합격자는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 또는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를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자. 답안지 작성은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 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차. 답안지에 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답안을 수정한 경우 해당 문항은 영점 처리 됩니다.

8 기타 안내사항

- 가. 소방공무원 가산적용 자격(면허)증 세부 내역 : 붙임1
- 나. 시험문제의 출제범위
 - 1)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 중 소방학개론의 범위 : 붙임2
 - 2) 사회, 과학, 수학 과목의 출제범위 : 붙임3
 - 3) 소방관계법규 과목의 출제범위 : 붙임4
- 다.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 붙임5
- 라.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측정방법 : 붙임6
- 마.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시험 도핑테스트 안내 : 붙임7
- 바.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 붙임8
- 사.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 : 붙임9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총무과 채용담당**(☎ 042-270-4061-3) 또는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소방행정담당**(☎ 042-270-6112, 611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은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http://gosi.daejeon.go.kr>)의 초기화면 『시험공고』란 에서 볼 수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가산적용 자격(면허)증 세부 내역

분야	5%	3%	1%
① 자 격 증 (면허증)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술사 기능장 - 기술사 : 건축, 건축설비, 실내건축, 건설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철도차량, 조선, 항공기관, 항공기계, 차량, 화공, 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전기응용, 전기철도, 철도신호,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가스, 건설안전, 기계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인간공학, 전기안전, 화공안전, 비파괴검사, 방사선관리, 원자력발전 - 기능장 :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설기계정비,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위험물, 전기, 전자기기, 통신설비, 가스, 에너지관리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사 - 건축, 건축설비, 실내건축,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폐도장비정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송강기, 농업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조선, 항공, 자동차정비, 그린전동자동차, 화공, 화학류제조, 화학분석, 생물공학,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철도신호, 광학, 반도체설계, 의공, 전자계산기, 전자, 임베디드,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처리, 정보보안, 방송통신,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가스, 건설안전,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 인간공학, 화재감식평가, 누설비파괴검사, 방사선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기상, 기상감정, 원자력,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산업기사·기능사 - 산업기사 : 건축, 건축목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폐도장비정비, 공조냉동기계, 기계정비, 송강기, 전자부품장착, 농업기계, 생산자동화, 철도차량, 조선, 항공, 자동차정비, 화학류제조, 위험물,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철도신호, 광학기기, 반도체설계, 의공, 전자계산기제어, 전자,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방송통신,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통신선로, 가스, 건설안전,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화재감식평가, 방사선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기능사 : 거푸집, 건축도장, 건축목공, 도배, 미장, 방수, 비계, 실내건축, 운수운물, 유리시공, 전산응용건축제도, 조적, 절근, 타일, 양화장치운전, 기계차운전, 굴삭기운전, 기중기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불도저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천장크레인운전, 컨테이너크레인운전, 타워크레인운전, 천공기운전, 건설기계정비, 폐도장비정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기계정비, 송강기, 전자부품장착, 농기계정비, 생산자동화, 반도체장비유지보수, 철도차량정비, 동력기계정비, 선체 건조, 전산응용조선제도, 항공기관정비, 항공기계정비, 항공공정정비, 항공전자정비, 자동차차체수리, 화학분석, 위험물, 전기, 철도전기신호, 광학, 의료전자, 전자계산기, 전자기기, 전자캐드, 정보기기응용, 정보처리, 방송통신,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통신기기, 통신선로, 가스, 방사선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2. 1급 4급 항해사·기관사·운항사 3.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4. 의사, 변호사 5. 소방시설관리사	2. 5급 또는 6급 항해사·기관사 3. 응급구조사(1급), 간호사 4. 소방안전교육사	2. 소형선박조종사,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3. 제1종특수트레이더면허, 제1종대형운전면허 4. 응급구조사(2급)
② 사무관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중 중직무분야」 참조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면허)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합니다.
 ※ 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의 2개 분야로 나누어 각각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는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해서만 가점하고, 자격증(면허증) 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은 합산하여 5%를 초과할 수 없음. (①+② 합산, 단, 5%초과시 5%만 가점)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 중 소방학개론의 범위

야	내 용
1) 소방조직	- 소방의 발전 과정 - 소방행정체제와 기능 및 책임 - 소방조직관리의 기초이론 - 소방자원관리(인적, 물적, 재정적 자원관리 개요) - 민간 소방조직의 종류와 역할 (의용소방대, 방화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설계 시공·감리·점검, 소방용 기계·기구의 제조·점검)
	- 화재의 예방·경계·진압·조사활동 -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 위험물 안전관리 - 구조·구급 행정관리와 구조·구급 활동 - 재난대응활동 등 소방조직 및 소방기능 관련 내용
재난관리	1) 재난 및 재난관리의 개념 - 재난의 특징과 유형 - 재난관리의 개념과 단계별 관리사항
	2)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 - 긴급구조 - 안전관리계획, 예방, 대비, 응급대책, 복구, 재정 및 보상 등 재난관리 관련 내용
연소이론	1) 연소개요 등 - 연소 반응식과 에너지 수치 - 연소의 조건 및 형태 - 발화의 조건 및 과정
	2) 연기 및 화염 - 연기의 정의, 연소 가스 - 화염의 형태 및 열방사 - 열전달 방식 등 연소 관련 내용
	3) 폭발개요 및 분류 - 폭발의 조건 - 화학적 폭발 (물리적 폭발과 개념 구분) - 기상 폭발과 응상 폭발 - 폭연과 폭굉 - 가스·분진·분해 폭발 - BLEVE 등 폭발 관련 내용

야		내 용
	1) 화재의 정의 및 분류	- 화재의 정의 - 화재의 종류(일반, 유류, 전기, 금속, 가스)와 종류별 기본 소화 방법
	2) 건물화재의 성상	- 화재의 진행단계별 특성 - 특수현상(플래시오버, 백드래프트 등)과 대처법
	3) 위험물화재의 성상	- 위험물의 류별(제1류 제6류) 특성과 소화방법 - 보일오버 등 위험물 화재의 특수 현상과 대처법
	4) 화재조사	- 개요(목적, 방법, 절차 등) - 화재 원인 및 피해 조사 기초 등 화재 관련 내용
소화이론	1) 소화 원리	- 소화의 기본 원리(방법) - 소화 방법(냉각·질식·제거·부촉매 효과)별 소화 수단
	2) 소화약제	- 물 소화약제 소화원리, - 포 소화약제 소화원리 -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소화원리 - 분말 소화약제 종류와 특성 및 소화원리 - 청정소화약제의 개념과 요건
	3) 소방시설	- 소화설비의 종류와 작동 원리 - 경보설비의 종류와 작동 원리 - 피난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 소화용수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 소화활동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등 소화 관련 내용 소방시설의 구체적 설치기준 제외

[붙임3]

사회·과학·수학 과목의 출제범위

과 목	세부과목 및 출제범위
사 회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 학	물리 I, 화학 I, 생명과학 I, 지구과학 I
수 학	수학 I 수학 II, 확률과 통계, 미적분 I

[붙임4]

소방관계법규 과목의 출제 법령

1. 「소방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 「소방시설공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4. 「위험물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붙임5]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종 목	성별	평가점수									
		1	2	3	4	5	6	7	8	9	10
악력 (kg)	남	45.3~48.0	48.1~50.0	50.1~51.5	51.6~52.8	52.9~54.1	54.2~55.4	55.5~56.7	56.8~58.0	58.1~59.9	60.0
	여	27.6~28.9	29.0~30.2	30.3~31.1	31.2~31.9	32.0~32.9	33.0~33.7	33.8~34.6	34.7~35.7	35.8~36.9	37.0 이상
배근력 (kg)	남	147~153	154~158	159~165	166~169	170~173	174~178	179~185	186~194	195~205	206 이상
	여	85~91	92~95	96~98	99~101	102~104	105~107	108~110	111~114	115~120	121 이상
앉아윗몸 앞으로 굽히기 (cm)	남	16.1~17.3	17.4~18.3	18.4~19.8	19.9~20.6	20.7~21.6	21.7~22.4	22.5~23.2	23.3~24.2	24.3~25.7	25.8 이상
	여	19.5~20.6	20.7~21.6	21.7~22.6	22.7~23.4	23.5~24.8	24.9~25.4	25.5~26.1	26.2~26.7	26.8~27.9	28.0 이상
제자리 멀리뛰기 (cm)	남	223~231	232~236	237~239	240~242	243~245	246~249	250~254	255~257	258~262	263 이상
	여	160~164	165~168	169~172	173~176	177~180	181~184	185~188	189~193	194~198	199 이상
윗몸 일으키기 (회/분)	남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이상
	여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이상
왕복오래 달리기 (회)	남	57~59	60~61	62~63	64~67	68~71	72~74	75	76	77	78 이상
	여	28	29~30	31	32~33	34~36	37~39	40	41	42	43 이상

※ 체력시험은 위 6개 종목의 만점 60점중 30점 이상을 득점하여야 합격됩니다.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측정방법

종 목	측 정 방 법 등
악 력 (k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장비 : 스메들리(smedley)식 악력계 ○ 측정 단위 : kg ○ 측정 방법 : 똑바로 선채로 양발을 적당히 벌려서 기립자세를 취하고 손가락의 제 2관절이 직각이 되도록 악력계를 잡은 다음 폭을 조절해 다시 잡고 좌, 우 교대로 2회씩 측정하여 가장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배 근 력 (k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장비 : 배근력계 ○ 측정 단위 : kg ○ 측정 방법 : 양발을 15cm 정도 벌린 자세로 배근력계 위에 올라서서 상체를 앞으로 약간 기울여 배근력계 손잡이를 잡은 후 배근력계와 상체의 각도가 30°가 되도록 배근력계 손잡이의 높이를 최적으로 조절한다. 준비가 되면 전력을 다해 몸을 일으킴으로써 배근력을 측정한다.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앉아윗몸 앞으로 굽히기 (c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장비 :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측정대(측정기 가능), 매트 1개 ○ 측정 단위 : cm ○ 측정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을 벗고 양 발바닥이 측정기구의 수직면에 완전히 닿도록 하여 무릎을 펴고 바르게 앉는다. 양발 사이의 넓이는 5cm를 넘지 않게 한다. - 양 손바닥은 곧게 펴고 왼손바닥을 오른손 등위에 올려 겹치게 하여 준비 자세를 취한다. - ‘시작’ 구호에 따라 상체를 천천히 굽히면서 측정기구의 눈금 아래로 손을 뻗친다. - 보조원은 피검자가 윗몸을 앞으로 굽힐 때 무릎이 굽혀지지 않도록 피검자의 무릎을 가볍게 눌러준다. - 계측원은 피검자의 손가락 끝이 3초 정도 멈춘 지점의 막대자 눈금을 읽어서 기록한다. -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유의사항 : 허리의 반동을 이용하거나 갑작스럽게 상체를 굽혀 손을 뻗었을 경우 또는 피검자가 앞으로 굽힐 때 무릎을 굽혔을 경우 재검사를 실시한다.

종 목	측 정 방 법 등
제자리 멀리뛰기 (c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장비 : 구름판 및 모래터(구름판 위치와 같은 높이로 모래를 정리) 또는 전자식 제자리멀리뛰기 측정판 ○ 측정 기록 : cm ○ 측정 방법 : 발 구름판을 넘지 않도록 서서 팔이나 몸, 다리의 반동을 이용하여 뛰며, 발 구름선에서 가장 가까운 착지점(신체의 어느 한 부분)까지 거리를 구름선과 직각으로 측정한다.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윗몸 일으키기 (회/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장비 : 매트(윗몸일으키기대, 전자식 측정기 사용 가능) ○ 측정 기록 : 회 ○ 측정 방법 : 양발을 3cm정도 벌리고 무릎을 직각으로 굽혀 세우며 양손은 교차해서 가슴에 대고 손끝이 어깨를 향하게 하여 등을 매트에 대고 누워 상체를 90° 이상 일으킨다. 1분 이내에 실시한 횟수를 측정한다.
왕복오래 달리기 (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장비(전자식 측정기 사용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 길이 20m, 1인당 폭 1m 이상 되는 평평하고 미끄럽지 않은 공간 - 음량이 적절한 CD 플레이어 또는 카세트플레이어 - 점증속도에 따라 울리는 신호음이 녹음된 CD 또는 오디오카세트 - 녹음 CD : 별도 ○ 측정 기록 : 단위(회) ○ 측정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m코스의 양쪽 끝선에 테이프나 분필로 선을 긋는다. - 출발신호원의 ‘출발’ 신호에 맞춰서 출발한다. - 먼저 도착한 피검자는 출발자의 ‘출발’ 신호가 다시 울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 신호가 울리면 다시 반대쪽 라인 끝을 향해 달린다. - 매 분마다 점점 빨라지도록 정해진 속도에 맞추어 20m 거리를 가능한 오래 왕복하여 달린다. - 왕복하는 동안 정해진 주기에 따라 속도가 빨라진다. - 동시에 출발한 피검자가 신호음이 울릴 때까지 라인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검사는 종료되고 이때까지 달린 20m 거리의 횟수를 기록한다.

비고 :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항으로 측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왕복오래달리기 종목의 경우 실수로 넘어진 경우 포함) 그 해당 종목에 한하여 재측정 기회를 추가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시험 도핑테스트 안내

□ 도핑테스트 시행안내

- 체력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응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지약물의 복용 및 금지방법의 사용은 금지되며, 대전광역시장은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도핑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제1항 제6호 관련,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인사혁신처 고시 제2014-7호)한 약물 및 방법은 금지됩니다(붙임 8 참고)

□ 테스트 대상자 선정방식

- 검사는 스크리닝 검사에서 양성반응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거나 무작위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 도핑테스트 절차 등 안내

- 채취된 소변 시료(A, B)는 곧바로 분석기관으로 전달되며, 전달된 시료 중 A시료가 분석되며, B시료는 냉장 보관됩니다.
- A시료의 분석결과가 대전광역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 A시료의 분석결과가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 해당 응시자는 비정상분석결과를 통보받은 후 일정기간내에 치료목적사용면책 등 의견을 제출하거나, B시료 분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대전광역시장은 관계 전문가 3인 이상을 포함한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됩니다.
- B시료분석을 요청할 경우, 당사자 혹은 대리인이 분석과정에 참관할 수 있으며, 분석결과가 비정상 분석결과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 음성으로 최종 판정되지만, B시료분석결과 역시 비정상 분석결과를 확인하는 경우, 불합격 결정을 내립니다.
- 불합격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 소송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 안내

- **(의의)**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이 요구되는 의학적 상태에 있는 경우 응시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치료목적사용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절차)** 응시자는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 별첨의 서식을 작성,

구비서류를 갖추어 별도 지정 일자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단, 치료목적사용면책이 필요했었던 경우에 한함)

- **(승인기준)** 치료목적사용면책은 다음의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승인합니다.

- ▶ 응시자의 급성 또는 만성 의학적 상태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금지약물이나 금지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응시자가 건강상 심각한 손상을 입었을 것으로 예상되어야 한다.
- ▶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치료목적의 사용에 따른 합법적인 치료로 인해 정상적인 건강상태로 되돌아갔을 때 예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추가적인 운동능력 향상효과가 없어야 한다.
- ▶ 금지약물과 금지방법 사용 이외의 다른 합당한 대체 치료가 없어야 한다.

□ 기타 유의사항

- 응시자는 본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지약물 및 금지약물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 모든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력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 될 수 있습니다.

- 붙임 1. 응시자 대상 검사 동의서(서식 1)
2. 응시자 치료목적사용 면책신청서(서식 2)

동 의 서

- 성 명 : ○ 생년월일 :
 ○ 응시번호 : ○ 연 락 처 :

2017년 월 일

위 본인은 대전광역시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함에 있어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에 따른 금지약물의 복용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귀 기관에서 시행하는 확인절차에 응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대전광역시장 귀하

치료목적사용 면책신청서

1. 응시자 인적사항

1. 성명: _____	2. 성별: 여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3. 생년월일: _____	4. 응시번호: _____
5. 핸드폰: _____	6. 이메일: _____

2. 의료정보

1) 충분한 의료정보를 포함한 진단소견

2) 사용 허가된 의약품으로도 치료 가능한 경우, 금지약품을 처방한 임상의학적 정당성을 설명하십시오

※ 진단 증빙자료(진단서, 처방전, 소견서등)를 첨부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증빙자료에는 포괄적 병력 및 그와 관련된 모든 검사보고서, 검사실 조사 및 영상검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가능한 경우 보고서 또는 편지의 원본에 대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증빙자료는 임상의학적 관점에서 극히 객관적이어야 하며, 만약 정확한 설명이 불가능한 경우, 다른 독립된 의료진의 소견도 포함시킬 수 있다.

3. 세부 진료내용

	1회 사용량	사용방법	사용빈도
1.			
2.			
3.			

duration of treatment:	1회 <input type="checkbox"/> 응급 <input type="checkbox"/> 기간(주/월) _____
------------------------	--

4. 담당의사 서약

나는 위에서 언급한 치료와 관련하여 의학적으로 적절하였으며, 금지목록 이외의 대체약물 사용은 위 응시자의 의료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성명: _____ 전공분야: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팩스: _____ 이메일: _____
 서명: _____ 날짜: _____

5. 응시자 서약

_____, _____는(은) 응시자 인적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인사혁신처에서 고시한 금지약물과 방법의 사용 승인을 요청한다. 나는 나의 의학정보가 시험실시기관, 시료분석기관 및 기타 시험관련 기관에 제공되는 것을 허락한다. 나의 의학정보가 위의 기관에 제공되는 것에 반대한다면 담당의사와 시험실시기관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 _____ 날짜: _____
 부모/보호자 서명: _____ 날짜: _____
 (미성년자이거나 장애로 인하여 서명이 불가능 할 때에는 부모나 보호자가 응시자와 함께 또는 응시자를 대신하여 서명할 수 있다.)

구비서류가 완료되지 않은 신청서에 대해서는 접수가 불가능하며, 완료 후 제 제출해야한다. 서류 접수 후 사본을 반드시 보관하시오.

[붙임8]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1 금지약물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금지되는 약물은 다음과 같다.

1. 동화작용제 : 총 7종 및 그 1)대사물질

가. 동화작용남성호르몬스테로이드(AAS)

① 외인성 동화작용남성호르몬 스테로이드(Exogenous AAS)

- ▶ 드로스타노론(drostanolone),
- ▶ 메티놀론(methenolone)
- ▶ 메타스테론(methasterone)
methasterone(17β-hydroxy-2α,17α-dimethyl-5α-androstan-3-one)
- ▶ 스타노졸롤(stanozolol)
- ▶ 1-테스토스테론(1-testosterone)
1-testosterone(17β-hydroxy-5α-androst-1-en-3-one)

② 외인성으로 투여된 내인성 동화작용남성호르몬스테로이드(Endogenous AAS)

- ▶ 테스토스테론(testosterone)

나. 기타 동화작용제 : 클렌부테롤(Clenbuterol)

2. 이뇨제 : 총 3종

- ▶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hydrochlorothiazide)
- ▶ 클로로티아지드(chlorothiazide)
- ▶ 푸로세마이드(furosemide)

3. 흥분제 : 총 3종

- ▶ 메틸헥산아민(methylhexaneamine, dimethylpentylamine))
- ▶ 메틸 에페드린(methylephedrine)
- ▶ 에페드린(ephedrine)

※methylephedrine과 ephedrine은 소변에 밀리리터당 10마이크로그램보다 많을 경우 금지된다.

1) : 생물학적 변환 과정을 통하여 생성된 모든 물질

4. 마약류 : 총 11종

- ▶ 부프레노르핀(Buprenorphine)
- ▶ 텍스트로모라미드(dextromoramide)
- ▶ 헤로인(diamorphine, heroin)
- ▶ 펜타닐(fentanyl) 및 유도체
- ▶ 히드로모르폰(hydromorphone)
- ▶ 메타돈(methadone)
- ▶ 모르핀(morphine)
- ▶ 옥시코돈(oxycodone)
- ▶ 옥시몰론(oxymorphone)
- ▶ 펜타조신(pentazocine)
- ▶ 페티딘(pethidine)

2 금지방법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금지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도핑검사과정에서 채취한 시료의 성분과 유효성을 변조하거나 변조를 시도하는 행위(소변 바꿔치기 및/또는 섞기, 이와 유사한 방법 등을 포함한다.)

[붙임9]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

구 분	내 용
1. 일반결합	가. 예후가 불량한 악성종양 나. 난치의 사상균성 장기질환 다. 난치의 사상충병(휘다리야병·트리파노조마병·일본주혈흡충병) 라. 유효적절한 치료를 받지 아니한 법정전염병으로서 전염성이 없어지지 아니한 사람
2. 비구강·인후기관계통	가. 화제진압 및 구조·구급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회화 및 호흡에 장애를 주는 비·구강·인후·식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 나. 정상적인 식사섭취가 곤란한 식도협착
3. 치아계통	가. 진구성인 아레티관절장직, 음식물을 씹는 근육(저작근)의 질환 및 손상으로 30mm 이상 입을 벌릴 수 없게 된 사람 나. 아레티 관절이 탈골되어 다시 맞추기가 곤란하게 된 사람 다. 진구성 복잡악골절 상태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 라. 발음기능 및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잃은 사람
4. 흉부	가. 전염성 또는 중증 결핵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급성 및 만성 늑막질환 다. 비결핵성 질환인 중증 만성천식증, 중증 만성기관지염, 중증 기관지확장증, 중증 폐기종, 중증 활동성 폐진균질환
5. 심장·혈관 및 순환기계통	가. 심부전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발작성 빈맥(150회/분 이상) 또는 기질성 부정맥 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방실전도장애 라.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동맥류 마. 유착성 심낭염 바. 확진된 관상동맥질환(협심증 및 심근경색증) 사. 폐성심
6. 복부 장기 및 내장계통	가. 빈혈증 등의 질환과 관계있는 비장증대 나.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만성활동성간염 또는 간경변증 다. 거대결장·계실염·회장염·궤양성 대장염으로서 난치인 경우
7. 생식 비뇨기계통	가. 중증 요실금 나. 진행성 신기능(腎機能) 장애를 동반하여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신질환(腎疾患) 다.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활동성 신결핵(腎結核) 또는 생식기결핵 라. 약물 등으로 조절되지 않는 신증후군(腎症候群)
8. 내분비계통	가. 중증의 갑상선 기능이상으로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비가역적인 합병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진행성 거인증 또는 말단비대증 다. 현재 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동반질환이 합병되어 있는 에디슨씨병 라. 현재 뇌하수체 기능 장애에 대한 약물(호르몬)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뇌하수체선종의 기계적 압박에 의한 비가역적인 뇌신경장애 또는 뇌기능장애 등의 합병증 마.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당뇨병성 또는 대사질환성 합병증

구 분	내 용
9. 혈액 또는 조혈계통	가.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치료하기 곤란한 혈우병 나. 혈소판 감소성 자반병 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재생불량 빈혈 라.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용혈성 빈혈(용혈성 황달을 포함) 마. 진성적혈구 과다증 바. 백혈병
10. 신경계통	가.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에 의한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후유증 나. 중추신경계 염증성질환에 의한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후유증 다. 만성 진행성·퇴행성 질환 및 탈수조성 질환(유전성 무도병,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보행실조증, 다발성경화증 포함) 라. 뇌 종양 및 척수 종양 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이상성 신경질환 바.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말초신경질환 사. 전신성 중증 근무력증 및 신경근 접합부 질환 아.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
11. 사지	가. 소방장비를 사용하는데 지장이 있거나 필기능력이 없는 사람 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골절·관절 질환자
12. 귀	가. 두 귀의 교정청력이 각각 40dB 이상인 사람
13. 눈	가. 두 눈의 맨눈시력이 각각 0.3 미만인 경우 나. 두 눈의 시야협착이 모두 1/3 이상인 경우 다. 안구 및 그 부속기의 기질성·활동성·진행성 질환으로 인하여 시력유지에 위협이 되고 시기능에 장애가 되는 질환 라. 중심 시야 20 이내의 복시를 가져오는 안구운동장애 및 안구진탕(眼球振盪) 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색각이상(색맹 또는 적색약(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14. 정신계통	가.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정신지체 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성격 및 행동장애 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정신병 라. 마약중독 및 그 밖의 약물의 만성 중독자 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간질
15. 혈압	가. 고혈압 : 수축기 145mmHg을 초과 또는 확장기 90mmHg 초과 나. 저혈압 : 수축기 90mmHg 미만 또는 확장기 60mmHg 미만
16. 운동신경	가.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있는 경우